● 결정문

개인정보유출주의 등록자:양해인. 등록일시:2025.05.28 16:22. 출력자:김중학. 다운로드일시:2025.10.01 20:21

수 원 지 방 법 원
제 4 행 정 부
결 정

사 건 2023구합75608 (본소)사용승인 무효

2024구합66694 (중간확인의소)사용승인 무효

원 고 김중학

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63, 114동 1202호

(하대원동, 자이아파트)

피 고 1. 성남시장

2. 성원,오피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

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19, 201동 1202호

(도평리, 도평우림2단지아파트)

3. 지에스건설 주식회사

서울 종로구 종로 33(청진동, 그랑서울)

주 문

원고의 2025. 5. 25.자 및 2025. 5. 26.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각 기각한다.

이 유

법원은 문서제출명령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는데(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), 문서제출명령을 신

개인정보유출주의 등록자:양해인, 등록일시:2025.05.28 16:22, 출력자:김중학, 다운로드일시:2025.10.01 20:21

청하는 것은 서증을 신청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므로 법원은 그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으며(대법원 2008. 9. 26.자 2007마672 결정 등 참조), 문서제출명령신청 내용에 비추어 그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이를 기각할 수 있다.

그런데 원고가 2025. 5. 25. 및 2025. 5. 26.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한 대상 문서들은 '사용승인(준공인가)의 근거가 된 재건축 사업 관련 문서 일체, 위 재건축 사업에 있어 원고 명의의 동의서, 위 재건축 사업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청산을 이행한 내역 및 그 근거 문서, 관리처분계획안 사본,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원고 명의의 동의서,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청산을 이행한 내역 및 그 근거 문서, 원고가 조합원인 근거' 등인데 이 사건 소송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,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기존에 수십 차례 이상 재건축결의, 관리처분계획안승인 결의, 조합원 지위 등을 다투는 취지의 법률분쟁을 해왔고, 원고 패소의 관련 판결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원고의 위 2025. 5. 25.자 및 2025. 5. 26.자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그 채택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25. 5. 28.

재판장 판사 임 수 연 전자서명완료

판사 양 해 인 전자서명완료

판사 김 장 환 전자서명완료